

1. 개정이유

극한기후 등으로 장래 물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공업용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용수 다변화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42조제5호)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만 다른 사업장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폐수를 사용하려는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뭄 등 공업용수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서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하여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폐수를 받는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나. 폐수를 주고 받는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연접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지한 경우

다. 폐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3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의 사용용도·사용처, 해당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양 등에 관한 서류, 고정관로 및 차단·저류시설 설치계획서 및 폐수를 사용하려는 자와 체결한 수급계약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또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을 적용할 때에는 제42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가뭄 등 공업용수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서 폐수를 고정관로로 이송하여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 <u>가. 폐수를 받는 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u> <u>나. 폐수를 주고 받는 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연결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지한 경우</u>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 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 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2. (생 략) 3. 영 제33조제3호 및 제42조에 해당되는 경우 가. ~ 라. (생 략) <u><신 설></u>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 우 : 그 밖에 처리방법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u>다. 폐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유출되 지 않도록 하는 차단·저류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u>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폐수의 사용용도 · 사용처, 해당 폐수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농도 · 양 등에 관 한 서류, 고정관로 및 차단 ·저류시설 설치계획서 및 폐수를 사용하려는 자와 체결한 수급계약서</u> <u>바. ----- 라목까지의 -----</u> ----- -----
---	---